##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6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김현정 · 민병덕 · 이학영

임오경・박 정・전재수

양문석 • 이개호 • 이수진

박균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.

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,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,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7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재판관의 임기) ①・② (생	제7조(재판관의 임기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
	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
	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
	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
	<u>무를 수행한다.</u>